

## 승소사례

## 직무발명의 정의, 보상금액, 귀속, 관련 세액공제 등의 종합사례



김준호 변호사

T. 02-3458-0910

E. kimjoonhyo@hklaw.co.kr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265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파기환송]

### 1. 사건의 경위

2013년 초의 어느날 필자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신0(주)의 임원이 인터넷으로 직무발명 전문 변호사를 검색하여 필자에게 전화를 하였던 것이다. 그 임원은 "신0(주)(=원고)는 대주주인 발명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13억여 원을 지급한 후 이 중 7억여 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국세청이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 승소 후 2심에서 패소하여 지금 대법원에 상고를 해 놓았는데 어떻게 싸우면 좋겠느냐"고 물어왔다. 일단 상담을 해 보기로 하여 만나서 사건의 경위를 들어보니, 제2심은 직무발명보상금 제도의 취지와 성격 등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판결로 보여, 대법원에서 해볼 만한 사건이라고 상담하였고 수임하기에 이르렀다.

### 2. 대법원 판단

대법원에서 다툼 결과는 파기환송(=원고 승소)이었다. 대법원 판단은 아래 4가지이다.

- 1) 제2심 판결은 직무발명보상금 수령인이 대주주인 사정, 수령액이 13억여원으로 큰 사정 등을 이유로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직무발명보상금 중에서 '정당한 보상의 범위가 얼마인지'를 다룰 여지는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 2) 제2심은 "... 최00은 자신과 특수관계자를 통하여 사실상 원고를 100%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사실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최00을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종업원'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 주는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최00의 직무발명임을 인정함으로써 최00가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3) 대법원은 "... 최00이 그 재직 중에 원고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토목공사, 조경공사와 관련한 발명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직무발명 성립의 3가지 요건 즉 ① 종업원(등) 일 것, ②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③ 종업원(등)의 직무 상의 발명일 것 등 중에서 ② 요건의 만족을 인정하였다.
- 4) 대법원은, "최00이 직무발명 이후에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설정하였다거나, 특허권의 일부를 양도하였다는 점만으로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함으로써, 우리 법상의 [발명자주의 원칙](직무발명의 완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즉 발명자권, 혹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종업원 등)에게 귀속한다는 원칙)에 따라, '최00의 통상실시권 설정 및 일부 권리의 이전 등의 행위가 직무발명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선고기일은 대법원 사건 접수 후 4개월여 후의 매우 이른 날짜로 정해져, 원고는 상고심 결과에 대하여 우려하였으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내었다. 피고는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서울고법)의 제1회 기일 수일 전에 법인세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고 원고에게 7억여원의 세금 환급을 하였다. 피고는 파기환송심에서 직무발명보상금 중에서 '정당한 보상의 범위가 얼마인지'를 다투지 않은 것이다.

### 3. 사례의 의의

이 사례는,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세액 공제의 문제이나, 직무발명제도에서의 3대 문제인 ① 직무발명 해당 여부, ② 직무발명보상금의 크기, ③ 직무발명의 귀속(발명자주의) 등의 문제와 결합된 사례이다. 필자 역시 이 사례를 수행하기 전에는 이러한 세액공제 제도를 잘 몰랐으며 이 사례를 통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이 연구개발비의 지급으로 인정되어 세액이 공제되는 제도를 알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기업의 세액 공제, 비용 절감 및 수익 증대, 근로자 발명자의 발명의욕 고취, 훌륭한 연구개발성과 취득 등을 위한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업무사례

## 'Be the Reds!' 사용금지 가처분



문건영 변호사

T. 02-3458-0906

E. kymoon@hklaw.co.kr

## 1. 들어가며

국가 대항 축구경기가 있을 때면 붉은 티셔츠에 두건을 쓴 응원단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들의 모습 어디에선가, 우리는 2002년 월드컵의 응원 문화와 열기를 발견하곤 한다. 그런데 나는 이들이 입은 티셔츠에 자꾸만 눈이 간다. 2002년 월드컵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던 '우리는 2002년 월드컵'이라는 문구는 찾아보기 힘들고, 다른 여러 가지 문양과 글자들이 새겨져 있다. 위 문구가 사용되지 않게 된 내막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저작권자의 과도한 권리 주장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하고 짐작해 본다.

이런 짐작의 이유는 내가 진행했던 사건 때문이다. 2002년 월드컵으로부터 거의 10년이 지난 2011년, '런 짐작의 이유는 내가 라는 글자를 디자인 *Reds!* 한 사람으로부터 그 저작권을 양수한 사람이 월드컵 응원 사진의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는 인터넷 사진판매 업체에 대해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그 디자인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응원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DB에 저장해서 유료로 사용허락 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저작물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사진을 촬영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면 모두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었다. 사진 중에는 티셔츠를 입은 모델을 정면에서 촬영한 것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응원하는 사진도 있었는데, 그들 가슴의 '두 저작권 침해가 되는 라는 글자는 읽을 수는 있었지만, 디자인은 명확히 보이지 않았다.

사건은 상식에는 반하는 듯했지만,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기는 쉽지 않았다. 내가 사건을 접했을 때, 이미 저작권자의 사진 DB 업체에 대한 가처분이 인용된 상태였다. 그 후 가처분 이의가 받아들여졌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저작권자의 항고도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하지만,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세 개의 인터넷 사진판매 업체 중 한 곳은 1심의 무죄가 파기되어 2심에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다. 세 개의 사건이 모두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 2. 판결의 내용과 의의

이 글에서 다루어 보려는 것은 위 서울고등법원의 2012. 6. 28.자 가처분 이의 결정이다. 이 결정은 '가처분 이의 결정이다. 를 디자인 한 도안(이 사건 도안)과 그것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을 촬영한 사진(이 사건 사진)에 대해 의미 있는 판단을 하였다.

### 가. 이 사건 도안에 대한 판단

우선, 이 사건 도안에 대해서는 그것이 디자인적인 요소 때문에 특별한 주목을 끌었다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거리응원에 사용된 데에 따른 외부적인 변수로 인해 주목을 끌게 되었다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2002년 월드컵 이미지를 떠올리도록 하는 반사적 이익을 누리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수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 대표팀의 서포터 단체인 '붉은 악마'의 이미지를 색상으로 표현한 붉은색 티셔츠나 두건을 착용하고 경기장과 거리 등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을 응원하였고, 위와 같은 응원문화가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거둔 우수한 성적에 비견될 만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화제가 되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전면에 이 사건 도안이 인쇄된 붉은색 티셔츠를 착용하였으나, 그 외에도 'KOREA', 'ALL THE REDS', '대한민국', 'Reds', 'AGAIN DREAM', 'Again 2002' 등이 새겨진 붉은색 티셔츠도 착용하였는데, 당시 위와 같은 응원문구의 의미 내용이나 도안·디자인상의 차이는 붉은색 티셔츠라는 공통된 요소에 가려져 특별한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당시 이 사건 도안은 회화나 서예와 같은 통상의 미술저작물이 갖는 디자인적이고 예술적이며 시각적인 창작적 표현형식의 독특성으로 인하여 특별한 주목을 끌었다거나 그 자체가 예술품으로서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예술성이나 독창적인 표현력을 지녔다기보다는, 표현 소재로서 공중의 영역에 있는 문자의 조합인 'Be the Reds!'라는 다소 선동적이고 호소력 있는 응원문구가 사용되었다는 점(위 응원문구 자체는 이 사건 도안의 저작자가 창안한 것이 아니다)과 여기에 다양한 도안이 인쇄된 붉은색 티셔츠와 그 티셔츠를 착용한 사람들이 군집하여 만들어낸 집단적이고 역동적인 시각적 이미지의 효과가 강렬하였다는 점 등과 같은 '이 사건 도안의 표현형식 밖에

있는 외부적인 변수'로 인하여... 주목을 끌게 되었고, 이후 나름의 대표성도 얻게 됨으로써, ... 이 사건 도안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2002년 월드컵 이미지를 떠올리도록 하는 반사적 이익**을 누리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도안의 저작권법상 보호범위 내지 제3자의 자유이용 범위를 정할 때에는 표현력과 가치의 상당 부분이 응원문구 자체의 특성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집단적인 활동에 기한 것이라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도안이 획득한 표현력과 사회·문화적 가치 전부를 저작권자가 배타적으로 독점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저작물의 창작 내지 가치 형성에 저작자가 기여한 것 이상의 것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어 정의와 공정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도안의 저작권자는 권리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아닌 한 공공복리와 문화의 다양성과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이념상 그 이용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에 이르러 위와 같은 역사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의미내용을 갖는 월드컵에 대한 이미지와 기억을 효과적이고 구체적으로 되살려 표현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널리 사용된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와 두건 등의 사물을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하거나 필수적이고, 이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그에 대한 표현이 어렵게 되는 면이 있으며, 이 사건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 등을 착용한 인물을 표현에 이용하는 경우까지 침해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도안이 이용된 모든 경우에 이용허락을 받을 것을 요구하게 되면, 이 사건 사진과 같은 사진저작물은 물론이고 미술, 연극, 영상저작물 등에 대한 창작 활동을 통하여 2002년 당시 공중이 집단적으로 형성한 월드컵 이미지를 표현할 자유 내지 표현방법 선택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 사건 도안의 저작권자로서는 권리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아닌 한 공공복리와 문화의 다양성과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이념상 그 이용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 나. 이 사건 사진에 대한 판단

한편, 이 사건 사진에 대해서, 위 가치분이의 판결은 우선 법논리적·형식적인 판단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

저작물을 그 목적을 달리하여 사진에 고정하는 것 역시 복제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저작물이 인쇄된 티셔츠나 두건에 주된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해당 저작물이 명확하게 특정되도록 촬영된 사진은 당해 저작물 자체에 대한 복제로 인정될 수 있고, 그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판매, 대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거리응원 사진이라 하더라도 당해 저작물에 주된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해당 저작물이 명확히 특정되는 경우에는 복제로 인정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진을 다시 복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역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이어서, 이 사건 사진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세 가지근거를 밝혔다. 즉, “① 이 사건 도안을 이 사건 사진에서 이용한 것은 이 사건 도안의 보호범위 밖에 있거나, 앞서서 본 이 사건 도안 자체의 특성, 이 사건 도안이 이 사건 사진에 표시, 이용된 방법과 위치, 이 사건 사진 전체 내지 창작적인 표현 부분과 이에 표시, 이용된 이 사건 도안 사이의 양적, 질적 주종관계 등에 비추어, ② 이 사건 사진은 이 사건 도안을 이용하였으나 이를 완전히 소화하여 작품화함으로써 이 사건 도안과의 실질적 유사성이나 종속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완전히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창작된 것으로서 이 사건 도안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③ 침해 자체는 일응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28조에서 정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의 이유로서 위 판결이 언급한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사진은 월드컵과 관련된 사상 내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안이 갖는 고유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드러난 예술성에 초점을 맞추었다거나 이를 직접 이용하였다기보다 월드컵이나 ‘붉은 악마’를 상징하는 ‘Be the Reds!’라는 응원문구의 ‘문자적 의미’를 사진 영상을 통한 표현력의 극대화를 위하여 간접적이고 부수적으로 포착, 이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 “이 사건 사진의 주된 피사체 내지 표현 대상은 촬영자 정면을 향하여 다양한 동작을 취하고 있는 인물 내지 그가 취하는 생기발랄한 표정 등으로서 이러한 경우 사람의 동작이나 얼굴의 표정이 갖는 강한 인상 내지 표현력과 이에 수반한 관찰자의 시선에 대한 강력한 흡인력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전체적인 관념과 느낌에 있어서 이 사건 도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진의 영상에 촬영, 표현된 배경적 성격의 사물들이 갖는 표현도는 상대적으로 감소되거나 위 인물의 표현 형식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즉, 의도적으로 저작물에 초점을 맞춘 사진의 경우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나, 사안에 따라 당해 저작물이 주된 피사체로서 이용된 것이 아니라 배경으로 우연

히 삽입, 촬영되거나 정당한 범위 내에서 간접적이고 부수적으로 이용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앞에서 본 이 사건 사진의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이 사건 도안이 촬영, 표현된 위치와 크기...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은 ...사진을 예로 들면서 이 사건 도안이 위 사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진의 주된 초점이 이 사건 도안에 있다고 주장하나, 위 사진의 주된 피사체는 인물의 전신이라는 점, 전신 촬영의 경우 사진의 중심부에 사람의 몸이 위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점, 티셔츠는 일반적으로 몸에 착용하는 것이고 도안은 통상 티셔츠 가운데에 인쇄된다는 점에 비추어 단순히 사진의 중심부에 이 사건 도안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도안을 이 사건 사진의 주된 초점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도안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간접적이고 부수적으로 이용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법원의 판단은 형식적이기만 해 보이는 법률의 세계에서 저작물과 사회가 연결된 묵중한 고리를 건져 내어 제시하고 있었다.<sup>1)</sup>

-----  
<sup>1)</sup> 2014. 8. 26. 대법원은 무죄 판결들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환송하고, 유죄 판결은 확정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저작물(Be the Reds의 디자인)의 ...창작적 요소에 담겨 있는 월드컵 응원문화에 대한 상징성 ...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저작물은 월드컵 분위기를 형상화하고자 하는 위 사진들 속에서 주된 표현력을 발휘하는 중심적인 촬영의 대상 중 하나로 보인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배척한 것이다.

## 이슈판결

## 오픈캡처 프로그램 사건과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관리전략



윤복남 변호사

T. 02-3458-0907

E. bnyun@hklaw.co.kr

## 1. 오픈캡처 프로그램 관련 법률자문

얼마 전 고문기업으로부터 법률자문 요청을 받았다. “오픈캡처(Open Capture)”라는 화면캡처 프로그램 업체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는 것이다. 경고장의 내용은 고문기업에 할당된 공인 IP주소에서 오픈캡처 프로그램을 접속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10일 이내에 정당한 라이선스 인증서를 제시하거나, 서버 및 3명의 사용자 기준 850만원을 유료구매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고문기업은 소프트웨어 관리 업무를 건실하게 하고 있던 곳이었으므로 IT담당자는 매우 당혹해 했다. 담당자가 조사한 결과 경고장에 적힌 공인 IP주소의 컴퓨터에는 현재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퇴직자의 컴퓨터여서 당시 프로그램 설치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도 어려웠다. 좀더 알아보니 해당 프로그램은 원래 무료 배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다가 어떤 기업에 저작권이 양도된 이후에 갑자기 유료화된 후 고액의 라이선스료를 공지하고, 경고장을 발송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유사한 기능의 화면캡처 프로그램이 무상이거나, 유상이라고 해도 20~40달러에 구매할 수 있는데도 기업용 프로그램에 대해 수 백만원을 구매액으로 제시하였으니, 경고장을 받은 고문기업 IT담당자는 너무 억울해 하였다. 매년 상하반기에 직원들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사용현황을 조사하여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고, 직원들에게 충분한 교육과 서약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던 차에 이와 같은 경고를 받게 된 것이다.

이에 고문기업을 대리하여 소프트웨어 회사 및 법무법인에 정중하지만 단호한 회신을 보냈다. IP주소 몇 개만 증거로 보내면서 수백만원을 달라는 식의 ‘위협’이 부적절하다면서,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해당 소프트웨어 약관상 사용자 컴퓨터 운영체제, 네트워크 정보, 통신정보 등을 수



집하고 있었음)를 제공할 것, 갑자기 유료화되면서 제대로 안내를 했는지, IP주소 등 컴퓨터 관련 정보 수집에 대해 제대로 동의절차를 거쳤는지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라이선스료를 일방적으로 매우 고액으로 산정한 점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해당 회신을 보낸 후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 2. 오픈캡처 프로그램 관련 제1심 판결

그로부터 얼마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경고장을 받은 100여개 회사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1심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 제1심 판결의 요약

- (1) 오픈캡처 6.7버전까지는 무료로 제공되다가, 7.0버전 업데이트시 '비상업용/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무료이고, 그 외에는 기업용 라이선스를 구매하도록 유료화되었다.
- (2) [설치과정에서는 저작권 침해 불인정함] 7.0버전 업데이트 과정에서는 "새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라는 안내에 대해 사용자가 확인버튼을 선택하여 업데이트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설치가 완료된 이후 사용자가 "약관 동의 및 비상업용(비업무용)/개인용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에 확인버튼을 선택했다고 하여 이를 두고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 (3) [설치 이후 프로그램 실행과정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7.0버전 업데이트 이후 오픈캡처 프로그램 실행과정에서는 RAM에 일시적인 복제를 하게 되므로 '비상업용(비업무용)/개인용'으로 사용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를 위반하였다.
- (4) 오픈캡처 회사가 제시한 공인 IP주소 및 MAC 어드레스에 의해 회사 컴퓨터에서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회사는 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MAC 어드레스'는 컴퓨터통신을 위한 LAN카드에 기록된 이더넷(Ethernet)의 물리적 주소로서 개별 컴퓨터의 식별이 가능함).
- (5) 오픈캡처 회사가 제시하는 라이선스료는 너무 고액이므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존에 무료배포했던 점, 다른 유사 프로그램 가격 등을 고려하여 1개 컴퓨터

(MAC 어드레스)에 대해 20,000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

위 판결에 따르면, 3건 사용시 손해액은 6만원이므로 이에 대해 850만원 청구를 한 오픈캡처 프로그램 회사는 사실상 패소한 것과 다름없었다.

### 3. 시사점 :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관리전략

위 판결은 저작권법적으로 '복제권 침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라이선스 동의 절차는 어떻게 해야 적법한 것인지, MAC 어드레스의 접속정보로 침해를 추정하는 것이 적절한 지 등 여러 법률적 쟁점을 포함한다.

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서, 특히 기업의 소프트웨어 관리담당자의 입장에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준다.

첫째, 본건과 같이 중간에 유료화 정책을 취한 소프트웨어, 특히 기업용으로 사용시 부분유료화 정책을 취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아닌 일반 직원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시 약관을 자세히 살펴본다거나, '비업무용/개인용만 무상'이라는 고지사항을 무심코 흘려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해 충분히 주의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 판결은 특정 프로그램으로부터 수집한 IP주소 및 MAC 어드레스에 대해 증거로서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그만큼 철저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단 1회의 접속 자체만으로 침해의 증거가 된다. 만약 오픈캡처 프로그램이 아니라, 1개당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급프로그램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위 판결만 보면 사용한 기업에 유리해 보이지만, 다른 비싼 프로그램의 경우에 적용한다면 훨씬 고액의 손해배상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정기적 소프트웨어 조사 및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요청된다.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의 범위는 매우 넓다. 위 판결에서 비록 면책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손해배상 책임제한 요소로서 기업들의 재발방지 노력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면책가능성을 최대한 넓히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 특히 위 2가지 사항을 감안하여 직원들이 자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모니터링과 그에 대한 대비를 훨씬 더 철저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 4.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대한 제언

글을 마치면서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고 싶다.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합리적 이해의 조율이라는 측면에서 업계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위와 같은 방식의 비즈니스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잠재적 소비자인 기업들에게 반감을 사고, 법원이나 여론으로부터도 저작권 보호에 관한 긍정적 반응을 얻기는 어렵다고 본다. 적절한 유료화 정책의 공지, 합리적 가격정책, 무분별한 경고장과 소송 자제 등 좀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 개정법령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고찰



이지선 변호사

T. 02-3458-0909

E. jislee@hklaw.co.kr

##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됩니다”

“2014년 8월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됩니다”라는 플래카드가 아파트 앞에 걸려있다. 그렇다. 2014. 8. 7.부터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수집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었다. 2014. 8. 7.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더 이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보관하고 있던 주민등록번호도 파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 분실 등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신설된 제24조의2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한정되어 있다. 여기서 주민등록번호 처리라는 것은 수집, 이용을 포함한다. (1)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할 경우, (2)기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가능한 것이다.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구체적 사정에 따르게 될 것이니, 통상적인 개인정보처리자의 입장에서는 고려대상이 되기 힘들다.

그러므로 좀 단순하게 본다면 법령이나 안전행정부령에 근거가 있어야만 주민번호의 수집과 이용 기타 처리가 가능하다. 한가지 더, 법령이나 안전행정부령에 근거 없다면, 이미 보관하여 처리하고 있던 주민등록번호라도 2016. 8. 6.까지 파기해야 한다.

## 2.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그렇다면 민간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일까.

- (1)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공적보험 처리, [근로기준법] 상 임금대장 작성, [보험업법]에 따른 단체보험 계약체결,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청구 등에서 처리하게 된다. 퇴직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서류를 퇴사 후 3년간 보관할 의무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사내 출입증이나 주차증 발급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는 없다.
-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허용된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수집하는 것은 금지되며, 현금영수증 발행업체에서 직접 제공하는 입력창을 통해서만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3)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할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을 작성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하다.
- (4) 금융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실명거래 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민번호 수집 이용이 허용된다.
- (5)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의 기록과 주민등록번호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이 허용된다.
- (6) 전자화폐를 발생하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실명제 상의 실지명의 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가능하다.
- (7) [보험업법]은 일정한 경우 보험요율 산출기관, 보험협회, 보험회사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 (8) [의료법]상 의사나 치과의사는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하다.

- (9) 공인자격관리자는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관리한다. 공인인증기관은 [전자서명법]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 3. 새로운 개인식별 제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처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 자체를 기본적으로 금지한다.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혹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는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개인 식별의 주요 수단인 주민등록번호이고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도 불가능하다. 그러니,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불안감에 떨지 않을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고 새로운 개인식별 방법 도입, 주민등록번호 제도 자체의 점검에도 좀더 많은 논의와 결실이 있기를 바란다.

## 한결소식

## 한결 판교사무소 개소, '현장밀착형 법률자문허브' 기대

## 1. 대형 법무법인 최초 판교테크노밸리 진출

법무법인(유) 한결은 판교테크노밸리에 분사무소를 열고 2014. 7. 1.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법무법인(유) 한결은,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IT, 게임, 바이오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법무, M&A, 국제거래, 금융, 회계, 조세 등의 분야에서부터 지식재산권, CRM(Compliance Risk Management) 등에 이르기까지 최고 수준의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현장에서 긴밀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대형 법무법인으로서는 최초로 판교테크노밸리 내에 분사무소를 개설하였다. 판교사무소는 파트너변호사로서는 강성, 김희제 변호사가 소속변호사로서는 김민진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한다.

## 2. 벤처기업의 주요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 한결의 안식 대표변호사는 "한결은 그동안 기업법무·M&A, 건설·부동산, 노동 등의 분야에서 손꼽힐 만한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인정받아 왔을 뿐 아니라 최근 경쟁의 격화로 급증하고 있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 관련 분야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교사무소 개설로 기술과 인력 중심의 산업에서 이미 경쟁력을 검증받은 판교테크노밸리의 선도기업들과 벤처기업들에게 수준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판교사무소는 아래와 같은 벤처기업의 주요 이슈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판교사무소 주요업무

- 기업법무· M&A
  - 회사설립, 주주총회, 이사회 관련 자문

- M&A, 부정경쟁방지 관련 자문
- 회계 및 세무, 기업형사 관련 자문
- 국제거래
  - 전략적 제휴, 국제계약, 라이선스계약 문제
  - 해외지사 설립 및 agent 관련 계약서 작성 및 자문
- 금융·투자
  - IPO, 스톡옵션, 벤처캐피탈 조달거래투자 관련 소송
- 지식재산권
  - 상표, 의장, 특허, 저작권 등 출원 및 관련 분쟁
  - 직무발명, 개인정보보호, 영업비밀보호 관련 자문
- 인사노무
  - 근로문제(불법스카우팅, 부당해고, 임금 등)
  - 고용계약, 동업계약, 지분배분 관련 자문
- 벤처기업 주요 이슈
  - 벤처기업 등록 및 인허가 관련 자문
  - 게임 관련 주요 이슈 (해킹, 서버, 불법아이템 등)
  - 애플앱스토어 및 구글마켓 등록 관련 자문

### 3. 혁신클러스터 내 '현장밀착형 법률자문허브' 기대

판교사무소 강성 변호사는 “판교테크노밸리에는 1,000여 개의 굴지의 벤처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대형로펌이 입주하지 않았으나, 한결의 공공지원센터 입주로 IT, 게임, 바이오 등 첨단 벤처클러스터에 요청되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의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게 되었다. 나아가 기업들의 해외진출 등 종합로펌의 특화된 자문서비스를 포함하여 판교의 입주기업들에게 원스탑 토털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라고 밝혔다.